

2020.12.23

이슈&리포트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휴업수당 발생유무

# 이런 이유로 이슈&리포트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가 되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벌써 몇주째 일요일 오후가 되면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발표에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각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제한(이용인원 제한 혹은 운영시간 제한 등) 혹은 집합금지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집합제한 혹은 집합금지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어 휴업을 실시하게 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유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방역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이슈&리포트>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휴업수당 발생유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김동미 노무사(노무법인 미담)가 제공해 주셨음을 밝힙니다.

## »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조치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중점 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일반 관리시설	정상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 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 » 거리두기 단계별 휴업수당 발생 유무

### 거리두기 1~1.5단계

일부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집합 제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전면적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바, 확진자 발생 등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른 정부의 강제 조치가 있지 않은 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있어서 **사업장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일정기간 휴업을 하거나 일부 휴업(근무시간 임의 단축)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 거리두기 2~2.5단계

**전면적 집합금지로 인해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일부 운영이 제한되는 경우 사업장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 거리두기 3단계

‘집합금지 제외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이에 따라, 집합금지로 인해 사업장의 폐쇄가 이뤄져 휴업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단계 하에서도 여전히 집합금지 제외 시설에는 해당하나, 고객감소,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발생

## » 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로 인해 사업장 폐쇄가 이뤄져 휴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으나, '집합제한'로 인해 일부 운영이 제한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자체적 판단에 의해 사업장을 전면 폐쇄하거나 근무시간 단축, 일부 직원에 대한 휴업 실시 등의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구분	세부 업종·분류
필수산업시설	물·전기·에너지·통신·우편·교통·석유·가스·항만·공항·안전·국방·치안·청소·건설·배송·유통·운수·방송 등의 산업 관련 시설, 정부·공공기관, 기업, 공장 등
거주·숙박시설	고시원, 호텔, 모텔 등
음식점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상점류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영업 등
장사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등
의료시설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상사, 헌혈시설, 동물병원 등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제외 시설(예)



HR의 성장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주 소 | 서울시 중구 다산로 11길 19, 백석빌딩 신관, 중앙경제  
전 화 | 02-2231-7293  
사 이 트 | [www.elabor.co.kr](http://www.elabor.co.kr)

